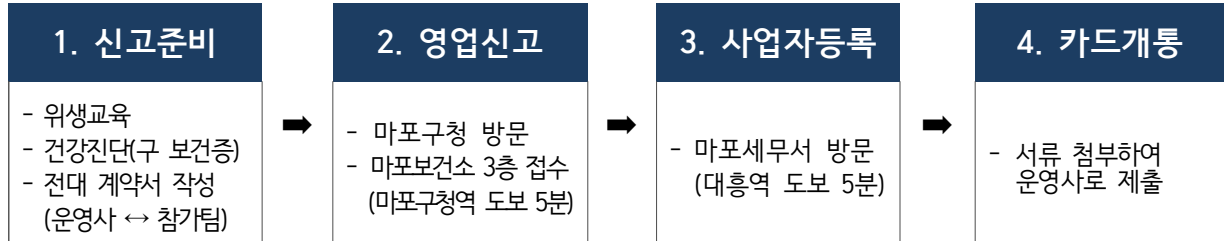


서울창업허브 공덕 키친인큐베이터 공유주방 / 제조주방 사용등록 메뉴얼

□ 허가 신고 절차



1. 신고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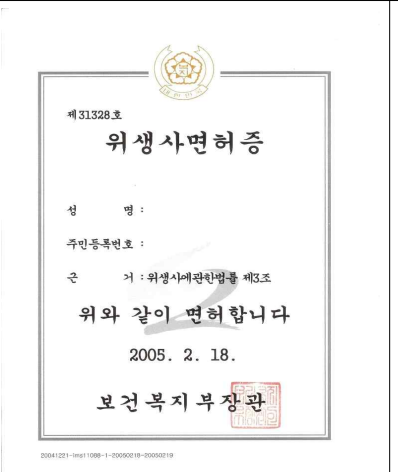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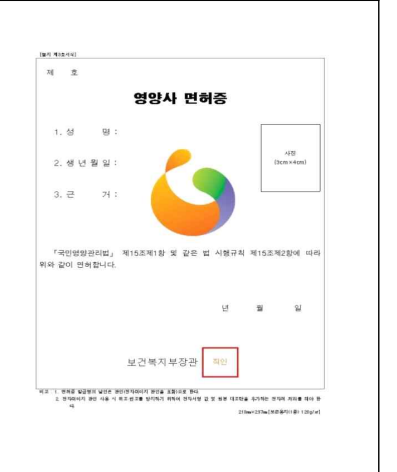
(1) 위생교육 (한국식품산업협회)

- 신규교육자는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됨 (집합교육 신청 <https://www.kfia.or.kr/>)
 (집합교육 일정의 경우 각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일정 확인 - 약 2주 소요)

업종	신규영업자	기존영업자
식품제조·가공업 공유주방운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	8시간 35,000원	3시간 20,000원
즉석판매제조·가공업	6시간 35,000원	3시간 20,000원

(2) 위생교육 제외 대상자

-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조리사 면허 (예시 하단 첨부)
-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 따른 영양사 면허 (예시 하단 첨부)
-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위생사 면허 (예시 하단 첨부)

조리사면허증	위생사면허증	영양사면허증
 <p>조리사면허증 예시. 위생교육 이수 여부, 건강진단 결과, 전대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</p>	 <p>위생사면허증 예시. 위생교육 이수 여부, 건강진단 결과, 전대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</p>	 <p>영양사면허증 예시. 위생교육 이수 여부, 건강진단 결과, 전대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</p>

(3) 보건증 검사 및 발급

- 각 구청 보건소 및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행
- 준비사항 : 신분증 및 발급비용 (카드결제 가능)
- **보건증은 발급 후 1년 동안의 유효기간**
(요식업 종사자,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/ 단체급식 종사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)
- 검사 후 3일~7일 소요 (검사 기관 직접방문 후 수령 or 온라인 발급)
- 온라인 발급 방법

e보건소(공공보건포털)	정부24
e보건소(공공보건포털) 사이트 접속 > 민원서비스 > 증명문서 발급 > 건강진단결과서 > 개인정보수집동의 > 본인 확인 후 발급내역에서 출력	정부24 사이트 접속 > 우측 상단 검색창에 '보건증발급' 검색 > 발급 클릭 > 본인 확인 후 발급

2. 영업신고

(1) 구비서류

- 전대계약서, 용역계약서, 운영용역사 승인 공문(서울시), 과업지시서
- 위생교육 수료증
-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
- 신분증
- 대리신고 시 필요 서류

개인사업자 대리신고	법인사업자 대리신고
위임장, 대표자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	위임장, 법인 인감도장, 법인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
(2) 구청 방문 접수

- 제조가공업, 즉석판매제조가공업, 식품소분업 등 제조관련 (마포보건소 3층 식품위생과 방문)
- 방문 작성 서류 (관할 구청에 구비 & 구청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가능)

식품영업신고서	제조방법설명서																				
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일 편)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> <p>식품 () 영업 신고서</p> <p>~ 신고연도를 표기하십시오.</p> </div> <div> <p>제외기간 즉 시</p> </div>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> <p>신 청 인</p> <p>① 성 명</p> <p>② 주 소</p> <p>③ 명칭(상호)</p> <p>④ 소 재 지</p> </div> <div> <p>⑤ 주민등록번호</p> <p>(전화 :)</p> <p>⑥ 영점의 종류</p> <p>(전화 :)</p> </div> </div> <p>식품위생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신고인 (자명 또는 날인)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p>구청장 귀하</p> <p>수인인자 또는 수인증지</p> <p>주주표</p> </div> <p>28,000원</p> <p>※ 구비서류</p> <p>1. 교육필증 1부 (별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취, 교육받은 경우에만 한함)</p> <p>2. 제조·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(별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한함)</p> <p>3. 시설사용계약서 1부 (식품은반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저장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)</p> <p>4.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가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지하수)장서 1부 (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·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)</p> <p>5. 역학조사용식품안전관리인증 1부 (별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물질검열 및 동소나목의 일반음식검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역학조사용식품안전관리인증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용식품 안전관리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)</p> <p>6. 유선 또는 무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(수상구조물용 항 유선망 또는 도선망에 별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물질검열 및 동소나목의 일반음식검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</p> <p>7. 소방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한 소방시설이 발령하는 소방·방화시설관리 증명서 1부 (별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물질검열을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방법시행령 제43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비탈면적의 합계가 66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)</p> <p>8. 식품가동관리법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1부 (상대 이상의 식품가동관리법을 설치하고 일반관리번호 부여하여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함)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> <p>공 보 화 인</p> <p>구 분</p> <p>일 자</p> <p>결 과</p> <p>확인자(서명 또는 날인)</p> </div> <div> <p>○ 건축물관리대장등본</p> <p>○ 도시계획관계확인서</p> 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10mm×297mm 【일반용지 60g/㎡ (제출용종)】</p>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조 방법 설명서</div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신 고 내 역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식품의 유형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제 품 명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원 재 료 또는 성분 명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제조 방법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성 상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용도 용법</td><td></td></tr> <tr> <td>포장 방법 및 포장 단위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유통 기간 및 유통 사용</td><td></td></tr> <tr> <td>기 타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신 고 내 역	식품의 유형		제 품 명		원 재 료 또는 성분 명		제조 방법		성 상		용도 용법		포장 방법 및 포장 단위		유통 기간 및 유통 사용		기 타	
구 분	신 고 내 역																				
식품의 유형																					
제 품 명																					
원 재 료 또는 성분 명																					
제조 방법																					
성 상																					
용도 용법																					
포장 방법 및 포장 단위																					
유통 기간 및 유통 사용																					
기 타																					

4. 카드 개통

(1) 개인사업자 구비서류

- 간판 및 업종확인 가능한 내외부 사진 4장
- 사업자등록증, 영업신고증, 통장 사본, 대표자 신분증 사본

(2) 법인사업자 구비서류

- 법인인감증명서 (3개월이내)
- 법인등기부등본 (3개월이내)
- 주주명부

주주명부상 최대주주가 사람인 경우	주주명부상 최대주주가 사업자일 경우
각자 생년월일, 법인명, 작성일, 법인도장날인, 3개월 이내	최대주주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 첨부

- 사용인감계 (통장도장과 법인인감이 다를 경우에만)
- 개인사업자 구비서류는 기본으로 준비